

요업무가 학술 및 기술용역제공사업이므로 동법에서 규정하는 공공법인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며,

- 2) 지방세법시행령은 학술용역 또는 기술용역단체가 영위하는 기술용역제공사업은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비록 당원의 기술용역사업이 수익사업이라 할지라도 공공법인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므로
- 3) 당원이 수도권에서 본사용 건물을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당연히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등록세는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함.

회 신

지방세법 제290조제1항제18호 규정의 “학술연구단체 기술진흥단체”라 함은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와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·학술활동 및 과학기술의 진흥·개발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할 것임. 따라서 주된 업무가 기술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술연구·기술진흥업무가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는 법령해석이 아닌 과세권자가 당해 법인의 정관·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과 사업 추진실적 등을 조사한 후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귀문의 경우 귀법인의 주된 업무가 승강기 검사나 기계식 주차장치 검사용역 제공사업인 경우에는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진흥단체로 볼 수 없어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님.

(세정 13407-964, 2000. 8. 1)

지방세 관련용어 해설

• 道稅의 拂入(도세의 불입)

市長·郡守가 도세를 징수할 때에는 道金庫, 지정된 은행 또는 우체국 소재지에 있는 市·郡은 수납한 날의 翌日까지 그 이외의 市·郡은 수납한 날로부터 5일안에 納付書를 첨부하여 道金庫에 불입하거나 지정된 은행 또는 우체국을 통하여 道金庫에 불입하여야 한다(地方稅§42①).

- 편집실 -